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24,000,000	27,720,000
일반회계	756,700,000	22,701,000
특별회계	167,300,000	5,019,000
공기업특별회계	42,600,000	1,278,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200,000	546,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400,000	732,000
기타특별회계	124,700,000	3,741,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300,000	129,0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361,000	70,8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23,000	27,69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130,000	93,900
주택사업특별회계	878,000	26,340
치수사업특별회계	9,460,000	283,8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963,000	118,890
대지보상특별회계	451,000	13,53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23,000	69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7,250,000	2,617,5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632,000	348,96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9,000	9,8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299,753천원으로 한다.